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권금자 소유물건(2024타경62034)

의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소정

감정평가서번호: W12410170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일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손영국

감정평가액	오억육천오백만원정 (₩565,000,000.-)					
의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소정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권금자 (2024타경6203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 10. 28	2024. 10. 21 ~ 2024. 10. 28	2024. 10. 28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건물	84.65x-- 108	건물	67.72	일괄	565,000,000
	대지권	46.36x-- 108	대지권	37.088		
		이	하	여	백	
합계					₩56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소재 "서울상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신희플러스 제103동 제14층 제1401호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본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시장가치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 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간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총액과 거래가액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등에 있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음.

수익환원법은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인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있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사례 등의 참고가격 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종합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10월 28일을 기준하였음.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0월 21일 ~ 28일 등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귀 제시목록 및 공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였음.

6. 기타 참고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음.

나.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건물가격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주거용 토지·건물배분비율표에 의거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다. 본건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구분건물 중 1인(권금자) 지분 전부(매각지분 갑 구 5번 10분의 8)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대상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구분건물의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면적대상은 지분비율에 의거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은 외부관찰 및 전례,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5 (갈현로1길 31)				
건물명 동호수			한신희플러스 제103동 제14층 제14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 경사지붕	사용승인일	2003.11.28.	지하층 /지상층	- /15층 (옥탑)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전체면적 (㎡)	대지권면적 (㎡)	용도
기호	동	층 /호수					
가	103동	14층 /1401호	$84.65 \times \frac{8}{10}$ ≒ 67.72	$62.32 \times \frac{8}{10}$ ≒ 49.856	$146.97 \times \frac{8}{10}$ ≒ 117.576	$46.36 \times \frac{8}{10}$ ≒ 37.088	아파트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비교사례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KAIS)]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 (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1	은평구 신사동 300	한신 휴플러스 100동	14층 /1400호 (본건)	84.65	7,655,050	648,000,000	2020.07.30
#2	은평구 신사동 300	한신 휴플러스 100동	6층 /600호	84.65	8,245,718	698,000,000	2024.07.28
#3	은평구 신사동 300	한신 휴플러스 100동	6층 /600호	84.65	7,655,050	648,000,000	2023.02.25
#4	은평구 신사동 300외	두산위브 아파트 100동	12층 /1200호	84.997	8,529,713	725,000,000	2024.07.13

나. 비교사례 선정

대상물건과 동일 지역 및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 #2>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사정보정

기준시점 현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로 판단됨. **(1.000)**

5. 시점수정

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 - 강북지역 - 서북권 - 은평구)

[출처 : 한국부동산원(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기준일 2021년 06월 = 100)]

사례기준 매매가격지수 (24년 06월)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 (24년 09월)	변동률(%)	비고
91.2	93.2	2.193 (1.02193)	93.2 / 91.2
2024년 06월 지수를 적용함.	2024년 09월 지수를 적용함.		

나. 시점수정치의 결정

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있고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변동 추이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1.0219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건물요인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요인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기호	사례기호	외부요인	건물요인 (내부요인)	개별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누계치
가	#2	1.00	1.00	0.99	1.00	0.990
	대상물건은 비교사례보다 개별요인(향별 효용 등)에서 다소 열세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례 전유면적당 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가	8,245,718	1.000	1.02193	0.990	8,342,281	8,34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가격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A	은평구 신사동 300	한신 휴플러스 100동	8층 /800호	84.65	7,560,543	640,000,000	경매
							2023.11.17
#B	은평구 신사동 300외	두산위브 아파트 100동	8층 /800호	84.958	7,921,561	673,000,000	시가참고
							2024.03.27
#C	은평구 신사동 300	현대 아파트 110동	19층 /1900호	84.83	6,955,087	590,000,000	경매
							2024.07.24
#D	은평구 신사동 10-00	형진 아파트 100동	9층 /900호	59.78	6,557,377	392,000,000	경매
							2024.08.29

2. 경매통계자료

[출처 : 부동산태인]

통계기간	서울		은평구		신사동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최근 1년 (아파트)	88.99	1,425	86.44	55	84.40	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격수준(전유면적기준) (원/㎡)
본건 유사 아파트	7,800,000 원/㎡ ~ 8,500,000 원/㎡ 내외수준

의견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아파트의 시세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치·조망·층 등에
따라 가격수준의 차이를 보임.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전유면적기준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기호	동	층 /호수					
가	103동	14층 /1401호	$84.65 \times \frac{8}{10}$ ≒ 67.72	$46.36 \times \frac{8}{10}$ ≒ 37.088	8,340,000	564,784,800	565,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대상물건은 아파트로서, 인근 유사 아파트(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경매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한신희플러스 제103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길 31 동소	365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사용승인일 2003.11.28
				1층	33.75			
				2층~4층	214.71			각층 기준
				5층~15층	210.51			각층 기준
				옥탑	27.92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3,202.6			
				(내) 철근 콘크리트조	8			
				제14층 제1401호	84.65x-- 10	67.72	565,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평가 권금자 지분 전부 (8/10)
				1. 소유권대지권	46.36 8 13,202.6x---x- 13,202.6 10	37.088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339,000,000 226,000,000	
	합 계						₩565,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소재 "서울상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공원, 공공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건물 내 제14층 제1401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 등 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로서,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와 접하며 주출도로를 통해 갈현로1길과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건축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 ② 본건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구분건물 중 1인(권금자) 지분 전부(매각지분 갑구 5번 10분의 8)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대상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구분건물의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면적대상은 지분비율에 의거 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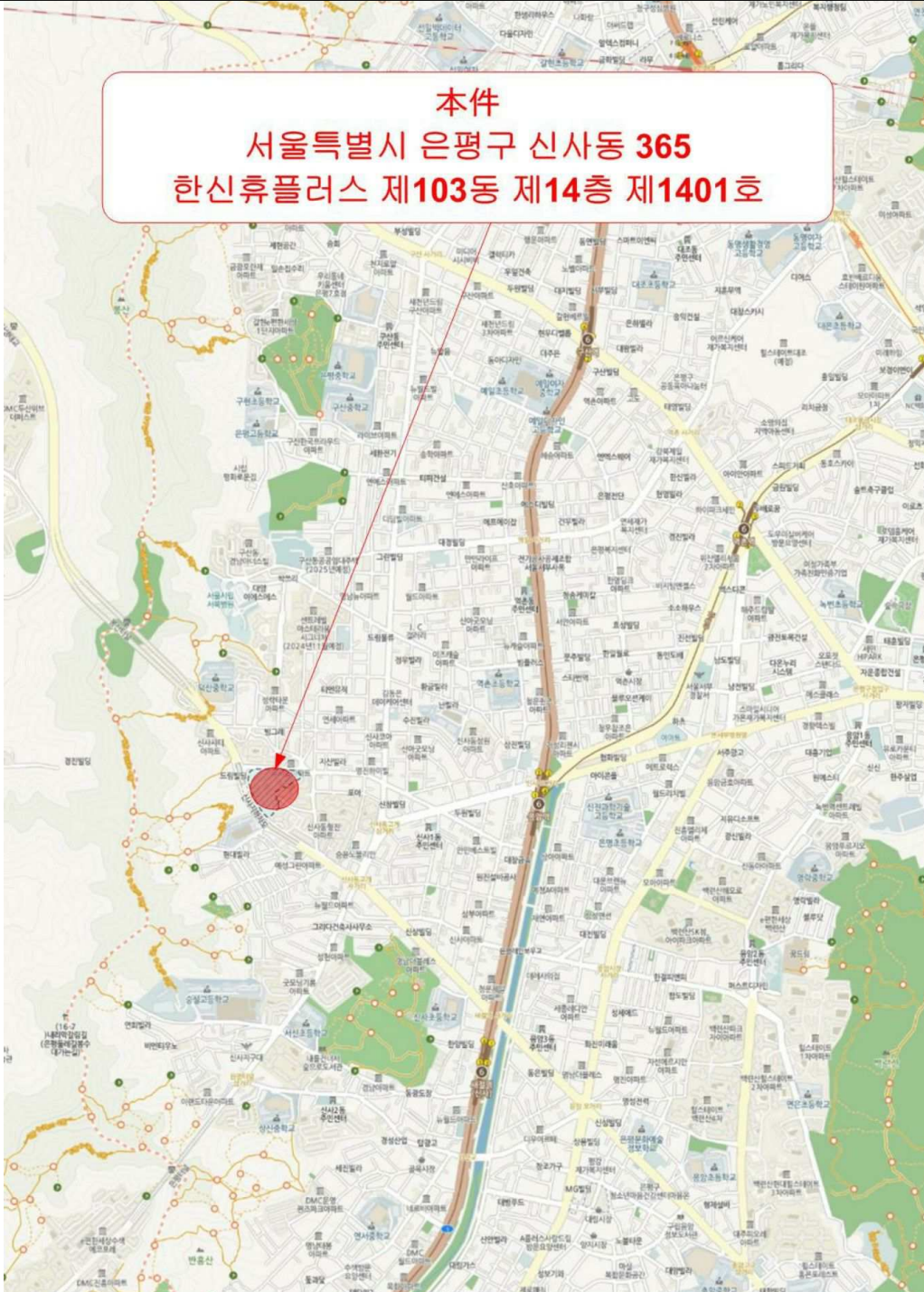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5 한신희플러스 103동 14층 1401호

本件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5
한신희플러스 제103동 제14층 제1401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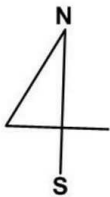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5 한신희플러스 103동 14층 1401호
-------	---



내 부 구 조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5 한신희플러스 103동 14층 1401호
-------	---



NO SCALE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5
한신희플러스 제103동 제14층 제1401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